

4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 법률

법률 제5,969호 1999. 4. 15.

개정 이유

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거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와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- 가.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,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것을 폐지함(현행 제15조 삭제).
- 나. 무한책임을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 후에도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구조안전상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책임을 폐지함(현행 제16조 삭제).
- 다. 유지관리업체가 시설물의 보수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함(현행 제18조제5항 삭제)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4항 중 “지정된”을 “등록한”으로, “제11조”를 “제9조”로, “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”를 “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지정”을 “등록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,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”를 “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3항 중 “지정을 취소”를 “등록을 말소”로 한다.

제9조의 2 본문 중 “지정받을”을 “등록할”로 하고, 동조 제3호 중 “지정이”를 “등록이”로 한다.

제9조의 3 중 “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”을 “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”로 한다.

제9조의 4의 제목 중 “지정”을 “등록”으로 하고, 동조 본문 중 “지정을”을 “등록을”로 하며, 동조 제1호 중 “지정을 받은”을 “등록을 한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 중 “안

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”을 “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”로 하며, 동조 제6호 중 “지정요건에”를 “등록요건에”로 한다.

제9조의 5 제1항 중 “지정의”를 “등록의”로 한다.

제15조, 제16조, 제18조 제3항 · 제5항 및 제35조 제2항 ·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6조 중 “지정을”을 “등록을”로 한다.

제40조 제1호 중 “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”를 “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”로 하고, 동조 제2호 중 “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”을 “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”으로 하며, 동조 제4호 중 “제17조 제1항”을 “제17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4조 제2항 제2호 중 “제9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”을 “제9조 제3항”으로 하고, 동항 제3호 중 “지정의”를 “등록의”로 하며, 동조 제10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보수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

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설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별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주택회보